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펀셋 플러스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클래스 신설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 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A2클래스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u></p>
클래스 신설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1.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A2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클래스 신설	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</p>	<p>제38조(보수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</p>

	<p>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A2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클래스 신설	<p>제39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39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A2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9 이내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	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